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극적 합의문 도출

경사노위 공식 출범 후, 첫 사회적 대화 결실 맺어
문 대통령 “사회적 대화에 자신감을 심어줘”

이세종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19.(화) 17: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로 주52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연착륙에 기여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갈등과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우리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의제 채택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서 시작됐다. 노동시간 단축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업종의 특성상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일부 업종에서는 즉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말 여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에 뜻을 모으고, 세부 개선 방안 마련을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논의 끝에 경사노위는 11.22. 1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12.20. 위원회 발족 이후 합의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시행의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9차례의 전체회의 개최 등 쟁점 조율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했다. 특히 협상 막바지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상 틀까지 가동됐다. 1박 2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은 각 주체들의 합의 의지와 경제 현실을 고려한 결단에 힘입어 극적인 합의로 끝을 맺었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노사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현안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사의 의기투합이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달랐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바람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

해 매우 감사하다”며, “국회가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 데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치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고, 합의문은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019. 2. 19.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

다음은 이번 합의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철수 위원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밤샘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해 기자분들과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합의는 노사 양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문 낭독) 특히 오늘 여기 지금 각 기관 대표 등이 저희 합의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8차례 회의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온 임금보전 건강권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양보했고, 저희도 그 부분이 보장된다면 6개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국회가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 처리되는 데 대한 참담함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조직으로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도 훨씬 어려운 과정입니다. 앞으로 법 제정 과정 그리고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저는 원래 노사 문제가 노사 간의 타협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문제를 대타협으로 해결했지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타협이 이뤄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협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국경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신의와 성실의 기반 위에서 대화하고 타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많은 고민과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습니다.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전적으로 진보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율에 힘을 써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합의는 경사노위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었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 대립되는 사실상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보완한 것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시간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임금감소 방지 방안을 균형 있게 다뤄야 했는데, 다행히 오늘 합의문에 이것들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1.22.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고 실제로 저희들의 첫 작품입니다. 첫 옥동자를 받아 본 셈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게 입장이 달랐습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면서 경영계는 ‘급하다. 탄력적 근로제도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제도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왜 필요한가? 좋다. 탄근제를 인정한다. 다만 건강권과 임금보전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원칙은 이래야 한다’ 등 수차례 협상이 오고가는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합의가 탄생했고, 아마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이번 합의만큼 구체적 사안이 명시된 합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김주영 위원장이나 손경식 회장께서 너무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노사가 대립·갈등만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 것을 진정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희망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모두 다함께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두 달이 넘는 동안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잘 마무리 하는 게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노사정이 마음을 모아 만든 합의안인 만큼 모쪼록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단체 대표들과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철수 위원장과 강성태 교수님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직책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경영계 위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정부 위원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공익 위원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간사	손동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